

부속서 III  
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

베트남

## 목록 가

### 주해

1. 이 목록은 제10.8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조치를 규정한다.

가. 제10.3조(내국민 대우)

나. 제10.6조(이행요건 금지), 그리고

다. 제10.7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
2. 이 목록은 제10장(투자)에 따라 작성된다. 제8장(서비스 무역)에 따라 이루어진 베트남의 약속은 부속서 II(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)의 베트남 양허표에서 확인된다.

3. 이 목록의 각 유보는, 적용 가능한 경우,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 또는 분야들을 지칭한다.

나. **하위분야**는 유보된 특정 산업/제품/행위를 지칭한다.

다. **산업분류**는 제조업, 농업, 수산업, 임업 및 수렵, 광업 및 채석업에 관한 국제 표준산업분류(이하 ISIC라 한다) 제3차 개정(이하 ISIC3)에 따라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. 필요하고 적절하다면, 유보가 분류체계에 정확하게 합치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은 그 유보의 정확한 적용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.

라. **정부수준**은 유보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지칭한다.

- 마. **의무유형**은, 각 경우에 맞게, 그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내국민 대우, 이행요건 금지,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무를 지칭한다.
- 바. **조치내용** 요소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. 의무유형 요소에 따른 의무는 그 유보의 조치내용 요소에 적시된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.
- 사. **조치근거** 요소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투명성 및 예시 목적으로만 비구속적인 참조를 제공하며,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추가적인 설명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4. 유보를 해석할 때,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 조치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

5. 베트남은 이 유보목록의 발효일부터 24개월의 기간 동안 이 목록에 규정된 자국의 유보항목을 추가,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련 비합치 조치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해야 한다. 그러한 모든 추가, 철회 또는 수정은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기탁처에 제출될 것이고 기탁처는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할 것이다. 그러한 비합치 조치는 이 유보목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통보 시 효력이 발생한다.

6. 이 주해는 이 목록의 일부를 구성한다.

1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용	:	내국민 대우, 이행요건 금지,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 발급된 투자 면허 허가증 또는 증명서에서 부과된 조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. <sup>1</sup>
조치근거	:	시행령 제 194/2013/ND-CP 호, 2013 년 11 월 21 일 시행령 제 118/2015/ND-CP 호, 2015 년 11 월 12 일

<sup>1</sup> 예시의 목적상, 그 조건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투자된 자산을 보상 없이 베트남 정부에 이전하기로 하는 투자자의 약속일 수 있다.

분야	:	제조업
하위분야	:	항공기 제조 산업
산업분류	:	ISIC 353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
조치내용	:	항공기 제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합작투자 또는 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. 외국인 소유 지분은 그러한 합작투자 또는 기업의 총 지분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.
조치근거	:	결정 제 58/2016/QD-TTg 호, 2016 년 12 월 28 일

분야	:	제조업
하위분야	:	철도차량, 예비부품, 왜건 및 객차 제조
산업분류	:	ISIC 352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
조치내용	:	철도차량, 예비부품, 왜건 및 객차 제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합작투자 또는 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. 외국인 소유 지분은 그러한 합작투자 또는 기업의 총 지분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.
조치근거	:	결정 제 214/QD-TTg 호, 2015년 2월 10일 결정 제 58/2016/QD-TTg 호, 2016년 12월 28일

## 목록 나

### 주해

1. 이 목록은 제10.8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,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다.

가. 제10.3조(내국민 대우)

나. 제10.6조(이행요건 금지), 그리고

다. 제10.7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
2. 이 목록은 제 10 장(투자)에 따라 작성된다. 제 8 장(서비스 무역)에 따라 이루어진 베트남의 약속은 부속서 II(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)의 베트남 양허표에서 확인된다.

3. 이 목록의 각 유보는, 적용 가능한 경우,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 또는 분야들을 지칭한다.

나. **하위분야**는 유보된 특정 산업/제품/행위를 지칭한다.

다. **산업분류**는 제조업, 농업, 수산업, 임업 및 수렵, 광업 및 채석업에 관한 국제 표준산업분류(이하 ISIC라 한다) 제3차 개정(이하 ISIC3)에 따라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. 필요하고 적절하다면, 유보가 분류체계에 정확하게 합치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은 그 유보의 정확한 적용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.

라. **정부수준**은 유보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지칭한다.

- 마. **의무유형**은, 각 경우에 맞게, 그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내국민 대우, 이행요건 금지,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무를 지칭한다.
  - 바. **조치내용** 요소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. 의무유형 요소에 따른 의무는 그 유보의 조치내용 요소에 적시된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.
  - 사. **조치근거** 요소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투명성 및 예시 목적으로만 비구속적인 참조를 제공하며,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추가적인 설명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4. 유보를 해석할 때,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 조치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
5. 이 주해는 이 목록의 일부를 구성한다.



1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포트폴리오 투자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투자법 증권법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록 증명서와 관련된 절차와 같은 투자 절차 및 외국환 관리 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투자법 기업법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국영기업의 지분이나 자산의 양도 또는 처분을 통한 민영화, 주식화 또는 자산 매각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국영기업 및 국가 기금에 의한 투자의 모니터링 및 관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-

4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지정 기업에 제한된 활동이 그 지정 기업 외의 기업에 자유화되거나 그러한 지정 기업이 더 이상 비상업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, 내국민 대우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.
조치근거	:	-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토지, 재산 및 토지와 연관된 천연자원 <sup>2</sup> 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이는 토지 취득, 토지 소유권 <sup>3</sup> , 토지 분배, 토지 리스, 토지 이용에 관한 정책, 토지 계획 및 기획, 토지 이용 기간, 토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조치근거	:	토지법 광물법 문화유산법 부동산사업법 투자법

<sup>2</sup> 토지에서 발견된 천연자원은 베트남 정부에 속한다.

<sup>3</sup> 예시의 목적상, 외국의 기구와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.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들의 투자 프로젝트 기간에 맞게 그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.

6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중소기업에 부여된 대우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중소기업지원법

분야	:	제조업
하위분야	: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꽃놀이용 폭죽을 포함하는 폭죽 생산</li> <li>- 연등 생산</li> <li>- 폭발성 물질의 생산 및 공급</li> <li>- 출판: 모든 종류의 출판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서, 소책자, 악보집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출판</li> <li>• 신문, 저널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</li> <li>• 기록매체의 출판</li> <li>• 그 밖의 출판</li> </ul> </li> <li>- 인쇄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서(시각장애이용 도서를 포함한다), 사진, 지도, 포스터, 전단지, 달력</li> <li>• 주화 조폐, 화폐 주조 및 인쇄, 유가증권, 금액이 표시된 양식, 재무 송장, 수표 등</li> <li>• 저널, 신문, 잡지, 정기간행물, 위조 인지, 증명서, 여권, 국가신분증 등</li> </ul> </li> <li>- 정보통신기술(ICT) 제품의 재제조 또는 재가공</li> <li>- 켈런 및 시가 생산</li> <li>- 주류 및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생산</li> <li>- 담배 생산</li> <li>- 버스 및 29 석을 초과하는 운송차량의 제조 및 조립</li> <li>- 금 생산</li> </ul>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상기에 언급된 하위분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투자법 환경보호법 베트남국가은행법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식량 안보 유지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—



분야	:	광업 및 채석업
하위분야	:	석유 및 가스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석유 및 가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투자법 광물법 석유가스법

분야	:	석유 및 가스, 비금속 광물 및 일반 건축자재용 광물을 제외한 광업 및 채석업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다음의 하위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광업 및 채석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물의 조사, 탐사 및 이용</li> <li>- 희귀 광물, 희소 금속, 원재료의 이용 및 가공, 건설자재 생산을 위한 점토의 이용, 건설용 및 기술용 유리의 생산을 위한 고품질 모래의 이용.</li> <li>- 기초 지리 조사, 탐사, 탐험, 이용 및 가공을 포함하는 특수 광물, 유독성 광물, 희귀 광물과 관련된 광물 활동</li> <li>- 해양 광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중요한 광물의 탐험, 채굴 및 가공</li> </ul>
조치근거	:	광물법 투자법

분야	:	수산업 및 양식업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서명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정의된 베트남의 주권 및 관할 수역에서의 수산업 및 양식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-

분야	:	임업 및 수렵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임업 및 수렵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임업법 산림보호개발법 생물다양성법

분야	:	농업
하위분야	:	희귀 식물의 재배, 생산 또는 가공, 희귀 야생동물의 번식 또는 축산업, 그리고 그러한 식물이나 동물의 가공(살아있는 동물과 동물로부터 얻은 가공물을 모두 포함한다)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상기에 언급된 하위분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작물생산법 축산법

분야	:	전력개발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전력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-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<p>베트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베트남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분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베트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베트남 정부에 의하여 인정된 분야 외의 분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이 협정의 발효일에 베트남표준산업분류(이하 “VSIC”라 한다)에 명시적으로 분류된 모든 분야는 당시에 베트남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어야 한다.</p> <p>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VSIC 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같이 이 협정의 발효일에 VSIC 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는 베트남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.</p>
조치근거	:	—

분야	:	제조업
하위분야	:	산업용 폭발장치의 생산 시멘트 생산 미리 혼합한 콘크리트의 생산, 암석 파쇄 자동차 조립 및 제조 모터사이클 조립 및 제조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
조치내용	:	이러한 하위분야들에 대한 투자는 현지 투자자에게 선호를 부여할 수 있는 베트남 정부 계획의 적용을 받는다. <sup>4</sup>
조치근거	:	광물법 시행령 제71/2018/ND-CP호, 2018년 5월 15일 결정 제02/2007/QD-BCT호, 2007년 8월 29일

<sup>4</sup> 예시의 목적상, 현지 모터사이클 제조업자에게는 국내 시장 수요 및 위치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량 측면에서의 특권이 부여될 수 있다.

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, 가게 및 단독소유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—

분야	:	—
하위분야	:	전통시장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전통시장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—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거나 이미 상장된 증권, 그리고 상장사 지분의 인수 및 상장사의 인수와 합병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—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사회적, 경제적 및 지리적 취약집단과 소수민족에게 권리 또는 특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—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베트남에서 지점의 형태로 된 외국 기업 및 투자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—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-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무기, 폭발물 및 보조장구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무기·폭발성 물질 및 보조장구의 관리·사용에 관한 법률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원자력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원자력법

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하항, 항구 및 공항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—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문화유산, 신앙 및 종교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문화유산법 신앙·종교법

분야	:	광업 및 채석업
하위분야	:	비금속 광물 및 일반 건설자재용 광물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비금속 광물 <sup>5</sup> 및 일반 건설자재용 광물의 가공을 제외하고, 상기의 하위분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광물법

<sup>5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비금속 광물과 일반 건설자재용 광물은 베트남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. 비금속 광물은 물, 온천 광물 및 광천수를 포함하지 않는다.

분야	:	-
하위분야	:	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, 출판, 인쇄, 언론매체, 뉴스 취재통신사, 대중매체,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상기의 하위분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-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-
산업분류	:	-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기술 이전 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
조치내용	:	<p>베트남은 보건, 조세, 국방 및 안보, 그리고 공익과 관련한 로열티 요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베트남은 로열티가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인 인에게 베트남이 주식, 지분 또는 이익을 보유한 경우 로열티 요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베트남은 관련 당사자들<sup>6</sup>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요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조치근거	:	—

<sup>6</sup> 관련 당사자들은 베트남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다.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고용된 외국인의 수 또는 비율, 최저임금, 기간 및 유형에 대하여 제한 <sup>7</sup> 이 부과될 수 있다.
조치근거	:	노동법 기업법

<sup>7</sup> 예시의 목적상, 그 제한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- 관리자, 임원 및 전문가의 경우 그들의 총 수의 최소 20퍼센트는 베트남 국민이다. 다만, 기업당 최소 3명의 비베트남인 관리자, 임원 및 전문가가 허용된다.
- 기업의 법적 대표는 베트남에 영구 거주한다.

분야	:	모든 분야
하위분야	:	—
산업분류	:	—
정부수준	:	모든 수준
의무유형	:	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
조치내용	:	베트남은 모든 서비스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근거	:	—